

신한BNPP퇴직연금가치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- 1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및 종류 C1 및 C-i 수익증권 신설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및 종류 C1 및 C-i 수익 증권 신설: 제2조(용어의 정의)	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6. (생략) (신설) (이하 생략)	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“ 종류형 ” 이라 함은 법 제231조 규정에 의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(이하 현행과 같음)
1.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및 종류 C1 및 C-i 수익 증권 신설 : 제3조 (집합투 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 (생략)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~ 4. (생략) (신설) 5. 모자형 (신설)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종류형 6. 모자형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종류C1 수익증권: 제한없음(판매수수료 없음) 종류C-i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(판매수수료 없음)
1.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및 종류 C1 및 C-i 수익 증권 신설 : 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(신설) (이하 생략)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종류C1 수익증권 2. 종류C-i 수익증권 (이하 현행과 같음)
1.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및 종류 C1 및 C-i 수익 증권 신설 : 제39조 (보수)	제39조 (보수) ①~② (생략) ③ (본문 생략) (신설) 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2.500] 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4.000] 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00] 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150] (신설)	제39조 (보수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(본문 현행과 같음) 1. 종류 C1 수익증권 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2.500] 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4.000] 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00] 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150] 2. 종류 C-i 수익증권 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2.500] 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100] 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00] 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150]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- 1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및 종류 C1 및 C-i 수익증권 신설
- 2 집합투자업자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----	-----	-----

1.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및 종류 C1 및 C-i 수익증권 신설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& 11. 매입 및 환매 기준&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& 11. 매입 및 환매 기준&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* 가입자격 (신설)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& 11. 매입 및 환매 기준&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* 가입자격 종류C1 수익증권: 제한없음(판매수수료 없음) 종류C-i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(판매수수료 없음)
1.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및 종류 C1 및 C-i 수익증권 신설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& 11. 매입 및 환매 기준&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& 11. 매입 및 환매 기준&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(계속) *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운용, 판매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사 보수, %: 0.25, 0.40, 0.03, 0.015 (신설) * 환매수수료 없음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& 11. 매입 및 환매 기준&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(계속) *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1 수익증권(운용, 판매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사 보수, %): 0.25, 0.40, 0.03, 0.015 종류 C-i 수익증권(운용, 판매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사 보수, %): 0.25, 0.01, 0.03, 0.015 * 환매수수료 없음
2. 집합투자업자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- 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15년 7월 31일)
2. 집합투자업자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 - 최근현황 갱신(기준일: 2015년 7월 31일)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- 1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및 종류 C1 및 C-i 수익증권 신설
 -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및 종류 C1 및 C-i 수익증권 신설: 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	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* 가입자격 (신설)	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* 가입자격 종류C1 수익증권: 제한없음(판매수수료 없음) 종류C-i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(판매수수료 없음)
1.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및 종류 C1 및 C-i 수익증권 신설: 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	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운용, 판매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사 보수, %: 0.25, 0.40, 0.03, 0.015 (신설) * 환매수수료 없음	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1 수익증권(운용, 판매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사 보수, %): 0.25, 0.40, 0.03, 0.015 종류 C-i 수익증권(운용, 판매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사 보수, %): 0.25, 0.01, 0.03, 0.015 * 환매수수료 없음
2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1부 5. 운용전문인력	제1부 5. 운용전문인력	제1부 5. 운용전문인력 - 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15년 7월 31일)